

# 모델 31

## 미소기준 (최소허용기준) 활용 모델

### 01 |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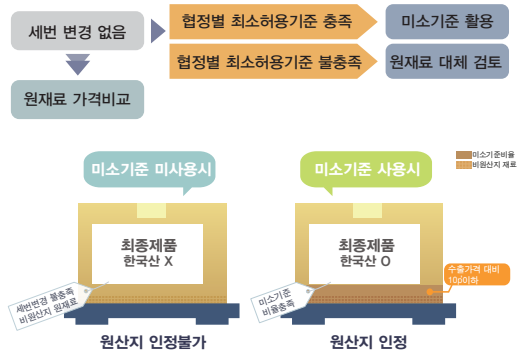
- 원재료 중 일정비율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원산지관리를 간소화한 모델
  - 세번변경기준 물품의 원산지판정 시 간과하기 쉬운 ‘미소기준’을 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수출경쟁력 확보

**미소기준**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(가격 혹은 중량)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요건(PSR)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### 02 | 비즈니스 모델

-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업화되어 모든 원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
- 세번변경기준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협정에서 규정한 미소기준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 필요
  -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원재료 원산지관리의 유연성 발휘
  - 원재료 종류가 많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가격이 미미한 원재료에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 창출

## 미소기준 이용 FTA 활용모델



※ **유의사항** BOM의 품목별 세번번호와 단가를 확인하고 FOB 또는 EXW에 대한 미소기준을 반드시 확인 필요

## 협정별 최소허용기준

구 분	칠레	싱가포르	아세안	인도	EFTA	미국	EU/터키	페루
가격 기준	일반	8%	10%		10%	10%		10%
	농수산물	1류~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	1류~14류 적용제외 15류~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	10%	1류~14류 적용제외	1류~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	1류~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(일부제외)	1류~14류 적용제외
중량 기준	섬유	8%	8%	10%	7%	10%	7%	8~30% 일부 가격 기준

## 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모든 산업분야 및 FTA